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26645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9. 27.

판결 선고 2024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82,243,438원의 한도 내에서, 42,151,444원 및 그중 41,055,264원에 대하여 2024. 6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한웅희

별지